

제123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

- **일시·장소** : '25. 4. 7.(월), 14:00~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(별관 4층)
 - * 회의방식 : 비대면 화상회의
- **참석 대상** :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재
 - ┌ (위원회) 총무위원 회의실 출석 / 위원장·위원 등 6명은 사무실(자택 등)에서 온라인 출석
 - └ (해경청) 기획조정관*, 안건 소관 국·과장, 기획·법무담당관 위원회 출석
 - * 차장 직무대행 체제 운영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해경청 대표로 참석
- **상정 안건 6건(심의의결 4건, 보고 2건)**

[심의·의결 4건]

연번	형식	안건명	주요내용	부서
1	예규	「해양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· 고소·고발 등 수사 관련 민원은 처리주무부서(수사과)에서 직접 접수하도록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* 일반민원 → 민원실 / 고소·고발 등 수사 관련 민원 → 수사과	운영지원
2	계획	'25년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시행계획	· 5대 추진 전략*, 16개 추진 과제 수립 *△ (건강복지) 해양경찰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△ (직무복지)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△ (가족문화) 일과 여가, 가족이 함께하는 조직문화 구현 △ (미래설계)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△ (소통·공감)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	
3	예규	「방제비용 부과·징수 규칙」 일부개정안	· '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제도 연구용역(24년) 결과를 반영, 합리적인 방제비용 징수를 위해 산정 기준 및 품목단가 개정** * 국제기준 도입 및 멸실기계·기구, 인건비 등 현실에 맞게 개선 * * 신규 도입·불용장비 재정비 및 요율 현실화	기동방제
4	예규	「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」 일부개정안	· 국가의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민간위탁금 적용 범위 확대*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개선** * 대규모 오염피해 발생 및 우려 → 사회적 이슈 등 긴급방제 필요시 * * 신설 방제비용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확인	

[보고 2건]

연번	안건명	부서
1	4월 주요 업무 보고	기획재정
2	2025년 1/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	위원회